

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3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김어진의원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정기점검 의무화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6. 8. 3. ~ 8. 7.

○ 제출방법 : 방문(주말·공휴일 제외)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

○ 기재내용 : 붙임 서식 참조

○ 제출기관 : 하남시의회(의회운영 전문위원실)

- 주 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, 하남시의회)
- 전 화 : 031-790-6510
- F A X : 031-790-6529
- 홈페이지 : <https://council.hanam.go.kr/> (의안정보 → 조례안 예고)

하남시의회 규칙 제 호

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취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 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 용 관련 교육을 <u>실시할 수 있다.</u>	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 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 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<u>할 수 있</u> <u>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하여야</u> <u>한다.</u>